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870호
- 나. 제안자 : 김용일 의원 (찬성의원 29명)
- 다. 제안일 : 2024. 5. 27.
- 라. 회부일 : 2024. 5. 30.

2.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제·개정에 따른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와 더불어,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여 책임있는 청년참여와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년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청년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년의 책무’를 신설함 (안 제4조의2 신설)
- 나.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에 대하여 다른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함 (안 제5조 신설)
- 다.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2항)
- 라. 다양한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기준을 마련함 (안 제10조제4항 및 안 제11조제3항)

다.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의 협의를 통한 공동의견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제 2항)

바. 조례상 용어를 정비함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4. 6. 4. ~ 6. 8.) 결과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미래청년기획단) : 원안 가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3. 9. 22. 시행)으로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청년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의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과 위원장의 연임 기준 마련하고 각종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나. 검토 내용

(1) 청년의 책무(안 제4조의2 신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는 개인의 삶, 커뮤니티 및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 청년의 시정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들의 책임있는 시정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년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p>제4조의2(청년의 책무) ①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시정참여를 통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기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p> <p>②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정참여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상호 존중하며, 안전한 활동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p>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¹⁾에서는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언적(“~노력해야 한다”)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준수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현재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위원으로 선정된 일부 위원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다른 위원들에 의해 문제 제기 되고 있는 점,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원 참여 의무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년위원의 권리(시정참여)와 함께 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청년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신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1)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02, 법제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u>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가 기본 조례로 기능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제도’(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제도’로 운영)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²⁾를 따르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012. 5. 22. 제정 후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개정

(3) 청년참여기구 운영시 고려사항(안 제8조제2항 신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은 행정안전부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³⁾과 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 19조의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원칙을 참고하여 청년참여기구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해 청년참여기구 운영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생략)</p> <p><u><신설></u></p> <p>② ~ ⑤ (생략)</p>	<p>제8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노력 2.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p>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조례 제8조제1항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의 조문에서는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주체를 ‘시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청년참여기구’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운영 주체에 ‘청년’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 모델3 >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2010.11.01. 행정안전부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9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기능분과의 자율적 운영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4) 청년참여기구 위원 임기(안 제10조제2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은 청년참여기구 위원 모집에 대한 규정으로 후단에 현행 조례 제9조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참여기구 위원으로 위촉가능한 대상을 신설하여 청년참여기구 위원 모집 시 자격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생략)</p> <p>②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p> <p>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p> <p>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0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삭 제></p>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⁴⁾에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청년참여기구 위원 위촉 과정을 살펴보면 청년참여기구 신청자 전원에게 시정참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년참여기구 위원의 자격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5) 청년참여기구 위원의 연임제한(안 제10조제4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4항은 청년참여기구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예산편성을 주로 하는바, 두 차례 연임 규정을 두는 것은 청년정책 경험을 보유한 위원들의 활동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예산편성·심의·집행·결산을 망라하는 3년의 예산 주기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청년참여기구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위촉된 위원에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필요하며⁵⁾,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에서 현재 위촉 위원이 다음에 연임하려는 경우 기존에 연속으로 위촉된 횟수를 통산하도록 적용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4)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24 참조, 법제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참여기구 위원 및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통산한다.

(6) 청년참여기구 위원장의 직무(안 제11조제1항~제3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은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장은 성별이 다른 2인으로 하고 그 명칭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과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 정비와 공동운영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u>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u></p> <p>② <u>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성별 동수의 2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둔다.</u></p> <p><신 설></p>	<p>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u>청년참여기구는 성별이 다른 2명의 위원장(이하 “공동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u></p> <p>② <u>공동운영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u></p> <p>③ <u>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3항은 공동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후단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공동운영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연임 규정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측면에서도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보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4항의 검토에서 살펴보았듯, 현 위원장에게 연임 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필요하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를 통해 현 위원장이 다음에 연임하려는 경우 기존의 선출 횟수를 통산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7) 총회 관련 용어의 정비(안 제12조제1항~제6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현행 조례에서 ‘총회’와 ‘회의’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어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총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가 규정하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에서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청년참여기구’의 총회의 명칭을 ‘서울청년시민회의’로 명시하였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회의 명칭은 서울시 정책방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규정하는 것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총회) ① <u>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서울청년시민회의(이하 "회의"로 한다)로 한다.</u>	제12조(총회) ① <u>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u>

현 행	개 정 안
<p>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p> <p>③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p> <p>④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u>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u></p> <p>⑤ (생 략)</p> <p>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p>	<p>② <u>총회</u>_____</p> <p>_____.</p> <p>③ <u>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④ <u>총회</u>_____</p> <p>_____, <u>그</u> _____</p> <p>_____.</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u>총회</u>_____</p> <p>_____.</p>

(8)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2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 절차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p> <p>② <u>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3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운영위원회 회의는 공동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⁶⁾으로, ‘청년참여기구’는 2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있어 소집권자와 소집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2인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는 방법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6)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31 참조, 법제처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의 후단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의사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다수결의 원칙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0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규칙은 제정하지 않고 내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있으나, 청년참여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절차에 대한 심의⁷⁾를 하는 운영위원회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거나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9) 청년참여기구 용어 정비(안 제14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고 사용 중인 '청정넷'이라는 용어를 조례 체계에 맞춰 '청년참여기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용어 정비를 통한 혼선 방지와 조례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년참여기구는	

7) 청년참여기구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13조 제1항)

1.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 논의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기구 분과 및 기획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서울시는 2013년부터 ‘청년참여기구’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오고 있음에도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그 명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청년참여기구를 누구나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용어으로써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으나, 서울시 정책방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유연하게 규정하는 것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청년의 책무),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및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제2항은 청년의 시정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참여와 효과적인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을 위해 청년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참여기구’ 운영의 기본 방향성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절하다고 하겠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3조(운영위원회)는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과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다만, 연임 규정을 현 위원과 위원장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 규정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12조(총회)와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에서는 용어 사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보이고, 총회와 청년참여기구의 명칭에 있어서는 서울시 정책방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시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이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운영 근거 확보를 위한 사후치유적 성격이 있었던 점⁸⁾,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청년의 삶과 청년 정책에 대한 수요나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8) 의안번호 10-01809,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2020. 9. 15.) 참조